**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 연구비 가이드라인**

**1. 운영 기준**

-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과 삼성전자 미래기술육성센터에서 운영하는

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은 공익 사업으로 **한국연구재단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매뉴얼(2014.12월 기준)을 準用**하며,일부 상이한 기준을 안내함

**2. 연구재단 기준과 상이한 항목**

-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연구진의 인건비를 지급하며 연구수당은 운영하지 않음

- 총 연구비 내에서 조기 집행 및 이월 가능

- 직접비와 인건비 간 비목 변경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, 부득이한 경우 사전 승인 후 집행 가능

- 연구비는 연구자가 반기 예산을 요청하여 년 2회(1월, 7월) 지급

- 회의비는 소속 기관 기준에 따라 운영

- 간접비는 (직접비 + 인건비) × 17.5%

※ 기업연구소 연구비 관리 가이드 라인은 별도 운영

**3. 적용 시기**

 - 본 가이드 라인은 2015년 7월 1일 이후 집행되는 연구비에 적용

 - 2015년 6월 30일까지 집행 연구비는 기존 배포된 가이드에 따름

- 이 상 -